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명: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호 [주식] (펀드코드: 17009)

2. 변경 시행일 : 2021.11.12(금)

3. 변경 내용 요약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최근일자 업데이트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 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 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최근일자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p>	<p>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p>

		<p>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p> <p>④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p> <p>④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 (생략)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p>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 (중전과 동일)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제79조 제2항 제5 호 가목</p>

		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제79조 제2항 제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생략)	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중전과 동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업데이트	수익률 변동성 : (2020.11.2)24.63%	수익률 변동성 : (2021.11.2)23.74%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오후 3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3시30분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1) 오후 3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3시30분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 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3시30분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 에 환매대금 지급	1) 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 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3시30분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 에 환매대금 지급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기준가격 산정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1좌당1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1좌당1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 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	최근일자 업데이트
---	------	---	-----------